입 찰 유 의 서

□ 입찰 관련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수요기관 설치 조건 및 시설현황 등을 충분히 확인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 확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정장소 및 기한까지 입찰참가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등록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록 마감 시 이후에 제출할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입찰일정 및 제출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 밀봉 제출하여야 하고, 수요기관 납품장소까지의 포장·운반비, 설치비 등의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4.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원화 총액으로 표기하여야 한다(단가계약일 경우에는 별도 정한 방식에 따름). 또한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으며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5.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서류 일체 및 각종 자료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제3자에게 배포·열람정보 누설하여서도 아니되며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만약 입찰참가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6.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투찰한 입찰참가자는 탈락 처리하며 재입찰(투찰)은 불가하다.
7. 입찰 결과 부적격자가 응찰하여 낙찰되거나 물품 규격과 부적합한 물품으로 투찰하여 낙찰될 경우 등은 입찰무효 처리하고, 해당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8. 입찰과 관련하여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과 입찰참가자 간 입찰참가자격 또는 실적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의 해석에 따르며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없다.
9. 최종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미 이행하거나 낙찰을 포기하거나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낙찰 무효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또는 각 수요기관에 현금으로 귀속조치 한다.
10.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1.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유의서를 입찰등록 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을 포함하여 입찰 및 사업내용, 계약조건 및 계약방식 등 모든 조건을 수락(승낙)하고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12. 입찰공고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법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전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시까지 수요기관에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금액의 조정이 발생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 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또는 수요기관에 현금으로 귀속 조치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기간 중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4.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_계약예규’를 준용하여 수요기관 요구사항데로 납부・이행하여야 한다.
5.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이 희망하는 지정장소까지 운반, 납품 및 설치 등을 완료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6. 납품된 물품의 검수(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 이행을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에 있어 수요기관에 청구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은 검수 합격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에 지급한다.

본 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고, 입찰참가자는 당해 입찰에 있어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